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2008.11.20	개정 2013.06.12
개정 2009.03.10	개정 2013.11.12
개정 2009.06.30	개정 2013.12.11
개정 2010.03.11	개정 2014.01.09
개정 2010.12.23	개정 2014.06.16
개정 2011.10.07	개정 2015.01.15
개정 2012.03.27	개정 2015.06.03
개정 2012.05.01	개정 2016.04.18
개정 2013.04.05	개정 2016.08.30
	개정 2018.08.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원

제 4 조(임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장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직원)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전문직으로 한다.<개정 2012.05.01.><개정 2013.12.11.><개정 2016.08.30.>

② 일반직과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하며 전문직의 직종은 가급부터 마급까지로 구분한

다. 직종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05.01.><개정 2016.08.30.>

③ 일반직은 경영·행정·기술·디자인 등 재단의 전반적인 사업 및 기능별 업무수행 분야 직원을 말한다.<신설 2012.05.01.><개정 2013.12.11.><개정 2016.08.30.>

④ <삭제 2016.08.30.>

⑤ 전문직은 재단 사업의 기능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시설 및 운영관리 등)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신설 2013.12.11.><개정 2016.08.30.>

⑥ 일반직 및 전문직 직위에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1.15.><개정 2016.08.30.>

⑦ <삭제 2016.08.30.>

제 6 조(정원) 재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재단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7 조(정원의 직원) ① 재단은 수행 업무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직을 별도 정원으로 둘 수 있다. 단, 재계약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재단은 시장과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수행을 위해 재단의 정원 및 기구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별도 정원을 두거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재계약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2.05.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정원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 8 조(조직의 편성) 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재단은 기획본부, 사업본부, DDP운영본부, 지원본부를 두고, 각 본부 산하에는 팀을 두며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8.08.00>
3.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6.04.18.><개정 2018.08.00>
4. 대표이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을 구성하거나 총감독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00>

1. 기획본부는 재단 및 재단 사업 전반의 중장기 및 단기 전략 수립과 이에 기준한 정책, 사업, 홍보 기획 등을 한다.
2. 사업본부는 시민디자인사업, 패션사업 등 재단 본연의 기능으로서의 디자인사업 추진 등을 한다.
3. DDP운영본부는 DDP의 시설, 공간 운영 및전시, 교육 등 콘텐츠 전반의 계획과 운영 등을 한다.
4. 지원본부는 재단 전 부서의 효율적 기능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수행 등을 한다.
5. 열린소통역은 직원 의견 수렴 및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제안, 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등을 한다.
6. 감사실은 내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예방감사 및 청렴·윤리경영 지원 등을 한다.
7.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콘텐츠 운영 및 공간 및 시설 운영 등을 한다.
8.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창업활동을 위한 사업 기획 및 각종 지원 업무 수행 등을 한다.

③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06.03.>

제 8 조의2 (보직) <신설>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8.08.00>

1.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2. 본부장 이상은 재단경영에 대한 통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리더로서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관리자로 분류하며,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해당본부의 사업과 성과를 책임지며 해당본부 각 팀을 통할한다.
3. 각 팀은 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4. 팀장과 팀원은 해당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로 분류하며, 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해당팀의 사업과 성과를 책임지며 핵심실무를 수행하고 각 팀원을 통할하고, 팀원은 팀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사업과 성과를 책임지며 실무를 수행한다.
5. 외부 위수탁사업 수행 시 별도 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며, 센터장은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6. 감사실은 감사실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7.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9 조(임시기구) 대표이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재단은 재단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9.03.10.>

제 11 조(업무분장) ① 재단의 조직별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외에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08.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 설립당시의 직제운영은 사업 수행 준비상태에 부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 칙 <2009.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이 직제의 개·폐로 인해 직명이 변경된 경우 재단 다른 관련 규정의 직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DDP경영단장(상임이사)의 정원확보 및 임명은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및운영조례』 및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정관』이 개정조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이 직제의 개·폐로 인해 직명이 변경된 경우 재단 다른 관련 규정의 직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DDP경영단장(상임이사)의 정원확보 및 임명은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설립및운영조례』 및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정관』이 개정조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이 직제의 개·폐로 인해 직명이 변경된 경우 재단 다른 관련 규정의 직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이 직제의 개·폐로 인해 직명이 변경된 경우 재단 다른 관련 규정의 직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정 원 표

<2012.5.1 개정> <2013.4.05 개정> <2013.6.12 개정> <2013.11.12 개정> <2013.11.12 개정>
<2013.12.11 개정> <2014.1.9. 개정> <2015.01.15 개정> <2016.08.30 개정>

정원표														
상임 이사	일반직							전문직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소계	
1	4	11	14	25	33	36	123	1	4	8	12	3	28	152

- 상용직 직무별 정원표<2016.08.30 삭제>

○ 일반기능직 직무별 정원표 <2013.12.11 신설> <2016.04.18 삭제>

○ 전문기능직 직무별 정원표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2013.12.11 신설> <2016.08.30 삭제>

< 별표 2 >

기구표 : 4본부 1실 1역 2센터

<개정 2012.03.27.><개정 2013.04.05.><개정 2013.12.11.><개정 2014.06.16.><개정 2015.06.03.><개정 2016.04.18.><개정 2018.08.00.>

